

5-8. 맞춤형복지비 현황

- 맞춤형복지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(도지사, 군수, 구청장)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, 2012년 우리 사하구의 공무원 복지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(단위 : 백만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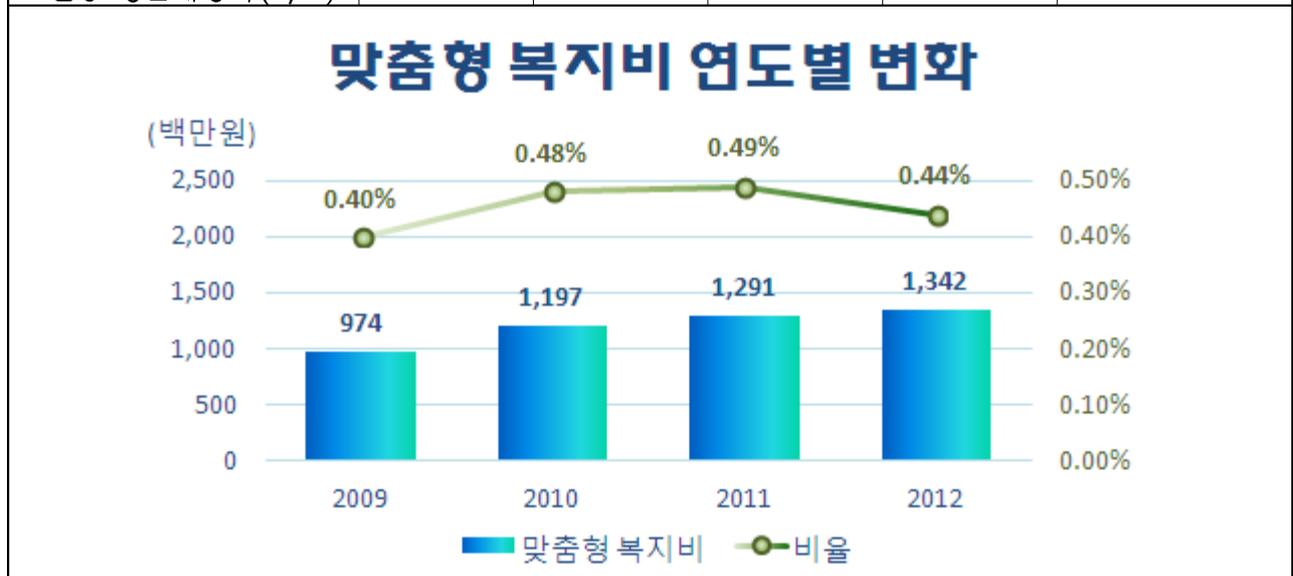
대상인원 (A)	세출결산액 (B)	맞춤형 복지비 (C)	비율 (C/B)	1인당 평균배정액 (C/A)
969	302,095	1,342	0.44	1

▶ 대상회계 : 일반회계

8 연도별 비교

(단위 : 백만원, %)

구 분	연 도 별				비 고
	2009	2010	2011	2012	
대상인원 (A)	922	900	954	969	
세출결산액 (B)	242,684	249,597	264,997	302,095	
맞춤형 복지비 (C)	974	1,197	1,291	1,342	
비율 (%) (C/B)	0.40	0.48	0.49	0.44	
1인당 평균배정액 (C/A)	1	1	1	1	



- ☞ 예산편성기준상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대상인원수의 증가로 전년대비 금액은 소폭 상승하였으나 세출결산액 대비 비율은 0.05% 감소하였습니다.